■ 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2호서식] <신설 2016.3.16.>

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		
❶ 원천징수 의무자	① 상호(법인명)		② 사업자등록번호 (납세관리번호)	
	③ 주소(사업장)		④ 전화번호	
❷ 파견외국법인	⑤ 상호(법인명)		⑥ 납세관리번호	
	⑦ 주소(사업장)		⑧ 소재지국	(코드:)
❸ 사용내국법인	⑨ 상호(법인명)		⑩ 사업자등록번호	
	⑪ 주소(사업장)		⑫ 전화번호	

❹ 환급신청 내역

(단위 : 원)

당초 원천징수 내역			⑯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대가 총액	⑰파견근로자의 근로대가에 대한 결정세액 총합계	⑱환급신청 세액 (⑭-⑰)
⑬대가지급액	⑭원천징수세액	⑮근로기간			

❺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

⑲예입처	⑳예금 종류	㉑계좌번호
은행 본·지점	예금	

신청인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7조의10 제4항에 따라 파견외국법인(「소득세법」 제156조의7 제3항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이 해당됩니다)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세무대리인	상호(성명)		사업자등록번호		전화번호	

첨부서류	1. 파견외국법인과 파견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(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별 인적 사항, 계약기간, 지급 대가 등이 확인 가능한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) 2. 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

작성방법

1. ②사업자등록번호(납세관리번호)란: 사업자등록번호, 납세관리번호,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(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) 등을 적습니다.
2. ⑧소재지국과 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(ISO)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.
3. ❹ 환급신청 내역의 기재사항 중에서 원화 환산이 필요한 경우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각각 지급한 때의 「외국환거래법」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3. ⑯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대가 총액: 파견외국법인이 사용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가 중 파견외국법인의 소속 파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.
4. ⑰파견근로자의 근로대가에 대한 결정세액 총합계: 파견외국법인(또는 사용내국법인)이 제출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의 결정세액을 모두 더하여 적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